

2. 장학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입교정신에 입각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구수정) (2021.6.22. 개정)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 대학교의 장학업무 중 예산 배정, 모금 활동 및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기획관리처장이 담당하고, 그 지급업무는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2019.2.8. 개정)
(2020.4.21. 개정)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기획관리처장, 교목처장, 학부(과)장 그리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3.4.22. 위원추가) (2019.2.8. 개정)

③ 장학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장학위원회의 직능) 장학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② 장학금 및 장학생 수의 학과별 배정(2020.4.21. 개정)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사 및 확정

④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장학금의 대상 및 종류)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통상학기(8학기)에 해당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인재-경제배려 대상자 등 재정적 도움이 절실한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한다. (2023.11.14. 개정)(2023.12.19. 개정)

②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022.2.8.항 신설)

1. 교내장학금 : 등록금 및 비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장학금

2. 기금장학금 : 이전 학년도에 적립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기금장학금은 교내장학금에 포함됨)

3. 교외장학금 : 당해 학년도 외부장학재단, 단체 및 개인이 기탁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4. 국고 장학금 :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③ 장학금 종류(2022.2.8.항 번호 변경)

1. 성적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성적에 따라 최우등.우등.준우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2005.3.1. 자구수정) (2013.4.22. 명칭변경)

2. 삭제 (2005.3.1.)

3. 외국인장학금: 본 대학교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한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삭제<2021.2.4.>

5. 근로장학금: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내 및 교외 협약기관에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 (2013.4.22.항목 추가)

6. 봉사장학금: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7. 보훈 및 통일 장학금 : 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직계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23.11.14. 개정)

8. 해외 연수장학금 :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05.3.1. 신설)(2023.11.14. 개정)
 9. 해외 봉사장학금: 교내외 공인된 해외 봉사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05.3.1. 신설)
 10. 꽃동네 장학금 : 대학설립이념 및 꽃동네 영성에 맞는 봉사실적이 우수한 학생,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05.3.1. 신설)(2023.11.14. 개정)
 11. 최귀동 장학금: 대학설립이념 및 꽃동네 영성에 맞는 봉사실적이 우수하며 꽃동네수도회에 입회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05.3.1. 신설)
 12. 복지장학금: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시설생활자·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자녀, 가계 곤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05.3.1. 신설) (2013.4.22.항목 추가)
 13. 꽃대장학금 : 신·편입학 정책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내규로 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최소 이수학점 및 초과학기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3.4.22. 항 신설)(2023.11.14. 개정) (2024.12.20. 개정)
 14. 삭제<2021.2.4.>
 15. 가족 장학금: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가족(부모·자녀, 형제·자매)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2021.2.4. 신설)
 16. 성직 수도자장학금: 가톨릭 성직자 또는 수도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21.4.22.항 신설)
 17. 특별장학금 : 경제적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국내·외 저소득층 신·편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23.2.7. 신설)
 18. 교직원 자녀장학금 : 전임교원 및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2023.11.14. 신설)
 19. 기타장학금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학금 (2023.11.14. 추가)
 - ④ 본 대학교 또는 학과(부)에 기탁된 외부장학금은 지체없이 본 대학 장학기금 계정에 예입한다. (2022.2.8. 항 신설)
 - ⑤ 외부장학금의 배정 및 추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2022.2.8. 항 신설)
 1.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2.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17. 특별장학금 : 경제적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국내·외 저소득층 신·편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023.2.7. 신설)
-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11월(1학기분)과 6월(2학기분) 장학금신청 기간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5.3.1. 자구수정) (2019.2.8. 개정) (2020.7.21. 개정)
- 제8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2000.9.1. 자구수정)
- ① 복학한 학생(2023.11.14. 개정)
 - ② 재입학한 학생
 - ③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 및 8학기 초과 등록생(2023.11.14. 개정)
 - ④ 입학성적 우수장학금에 의한 4년 장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점 4.0 미만인 학생(2023.11.14. 개정)
 - ⑤ 학칙을 위반하여 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 ⑥ 삭제<2023.11.14.>
- 제9조(이중지급 금지)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다. 단, 교내장학금 총액

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근로장학금, 외부지정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2005.3.1. 자
구수정) (2013.4.22 자구수정)

② 이중장학금 지급 시 지급총액이 등록금총액을 넘어설 수 없다. 단 외부지정·근로장학
금은 예외로 한다. (2005.3.1. 신설)

제10조(장학증서 지급방법) 학생지원처에서 발급된 장학금 지급증서는 원칙적으로 등록금고
지서에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포상의 성격을 가진 장학금과 등록금 납부일 이
후에 확정된 장학금은 학생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2013.4.22. 내용수정) (2019.2.8. 개정)

제11조(지급 기간) ① 장학금의 지급은 한 학기 단위로 하며,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급한
다.

② 해당 학기를 초과한 장학증서는 무효로 한다.

제12조(장학금신청의 공고) 장학금신청에 관한 사항은 매 학기 신청기일 30일 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무) 교양학부 및 학과에 장학금이 직접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재무과에 입금하
고 지체 없이 기획관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2.8.개정)(2020.4.21. 개정)

제14조(규정 개폐)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결의(재적 위원 과반수 찬
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
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